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12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이병진·윤후덕·송옥주

권칠승 • 한민수 • 한정애

민병덕 • 이개호 • 윤준병

임호선 · 이상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·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,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~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.

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 월 31일"을 "제1호 및 제2호는 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	세액공제) ①
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	
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	
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	
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	제1호 및 제2호는 2034년 12월
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・	<u>31일</u>
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	
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	
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	
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	
하나만을 적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	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	
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	
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	

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해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하는 구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.

- 1. (생략)
- 2. 공제금액
  - 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 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
    - 1) (생 략)

•
(-2. 2. 2. 2. 4.)
1. (현행과 같음)
2
가
, ,
, , 

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2)
<u>2034년 12월 31일</u>
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